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

- 존경하는 김영옥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은평 제2선거구 출신 이병도 의원입니다.
-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지금부터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2414호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 혹한, 대기오염 심화로 온열·한랭 질환
및 감염병이 증가하는 등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후변화에 따른 보건의료
시책을 마련하도록 「보건의료기본법」이 개정되었습니다(법률 제20589호,
2024. 12. 20. 일부개정, 2025. 6. 21. 시행).

이에, '시민건강관리 종합계획'에 「보건의료기본법」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한 건강관리 정책의 수립·시행을 촉진하고, 시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이 개정안의 입법취지를 살피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